

수 신 조합원 제위
참 조
제 목 2023년도 신용평가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의 금년도 신용평가 신청요령 등을 수록한 『2023년도 신용평가 안내』와 『재무제표 전송방법 안내문』(동 안내문은 조합원이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제공)을 송부 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신용평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정기 신용평가 신청기간(12월 결산법인 기준)은 2023년 4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로 우리 조합 홈페이지(www.cgbest.co.kr) 인터넷창구를 통해 신용평가를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용평가신청서에 의한 서면신청도 가능합니다.

4. 신용평가가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평가에 일정기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만 기존 등급의 유효기한 경과 전에 평가가 이루어져서 조합 업무거래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조기 신청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5. 기타 신용평가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재무제표 전송방법 안내문 1부
2. 『2023년도 신용평가 안내』 1부. 끝.

건 설 공 제 조 합 이 사 장

직 인
생 략

재무제표 전송방법 안내문

1. 매년 우리조합 신용평가에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조합 2023년도 정기 신용평가 관련, 2022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전송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NICE평가정보(02-3771-1100) 또는 건설공제조합 고객상담센터 (1588-1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제표 전송방법

※ 재무제표 전송과 관련하여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프로그램 재무제표 전송 과정에서 수수료 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으면, 임의로 기재하고 문자가 수신되어도 결제할 필요 없음)

프로그램	전송자	안 내 사 항	전 송 방 법
원클릭시스템	세 무 대리인	<p>○ 경 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① 조합 홈페이지(cgbest.co.kr) 접속 ② 상단 '가입/신용평가' 아래 '신용평가신청' 선택 ③ '재무제표 전송방법안내문 보기' 선택 ④ '재무제표 직접제출서비스(원클릭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div>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대리인은 원클릭시스템 또는 자체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4월 1일부터 전송 가능 • 조합원 신용평가 신청 전 재무제표 전송 가능 	① [원클릭시스템(세무증명서 및 재무자료 제출하기)] 실행 후 로그인 ↓ ② 원클릭시스템내 '3.자료등록'에서 자동조회(별도처리 없음) ↓ ③ 원클릭시스템내 '4.업체정보 입력 및 정보활용동의'에서 동의진행 ↓ ④ '제출' 버튼 클릭
	조합원	<p>○ 경 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① 조합 인터넷창구(cyberbiz.co.kr) 접속 및 로그인 ② 상단 '신청' 아래 '신용평가신청' 클릭 후 신용평가 신청 진행 ③ '신용평가신청' 및 '조합원실태현황' 입력 ④ '재무자료 제출' 화면 내 '제출방법'에서 '온라인' 클릭 후 '조합원 온라인 직접제출' 선택 ⑤ '원클릭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div>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원에 한해 원클릭시스템을 이용하여 4월 8일 이후부터 직접전송 가능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는 법인세 신고 마감일 기준 익월 8일 이후부터 제공 	
더존 Smart A	세 무 대리인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송기관 건설공제조합(기관코드 : 403)으로 입력 후, 전송업체 담당자 정보는 임의 입력 	① [자동전표] ↓ ② [금융자료전송/일일관리] ↓ ③ [재무제표부가세전송]

순서

제1절 신용평가 개요	1
제2절 신용평가 절차	2
□ 신청절차 요약 및 신용평가 대상	2
□ 신용평가 신청기간 및 신용등급 유효기간	3
□ 신용평가 신청방법	3
□ 필요서류	4
□ 재무제표 전송방법	5
제3절 신용평가시스템	6
제4절 신용평가 사후관리	8
제5절 신용평가 관련 Q & A	12
□ 신용평가 일반	12
□ 신용평가 신청 개요	15
□ 신용평가신청서 등 작성방법	17
□ 신용평가 신청 및 재무자료 제출관련	19

제1절

신용평가 개요



조합업무거래의 출발점, 신용평가

조합은 1995년 건설전문보증기관 최초로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지난 28년간 쌓아온 건설업 관련 데이터와 평가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문신용평가기관과 공동으로 건설업 특화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입니다.

■ 신용평가 목적

- 신용평가제도는 조합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조합과 업무거래토록 하는 제도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공제조합 정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신용등급에 따라 업무거래를 차등화하는 것은 신용위험관리를 통해 조합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신용평가의 주요관점

- 보증 및 용자 등 조합 업무거래로 발생하는 부실채권 최소화 등을 위해 조합원의 재무상환능력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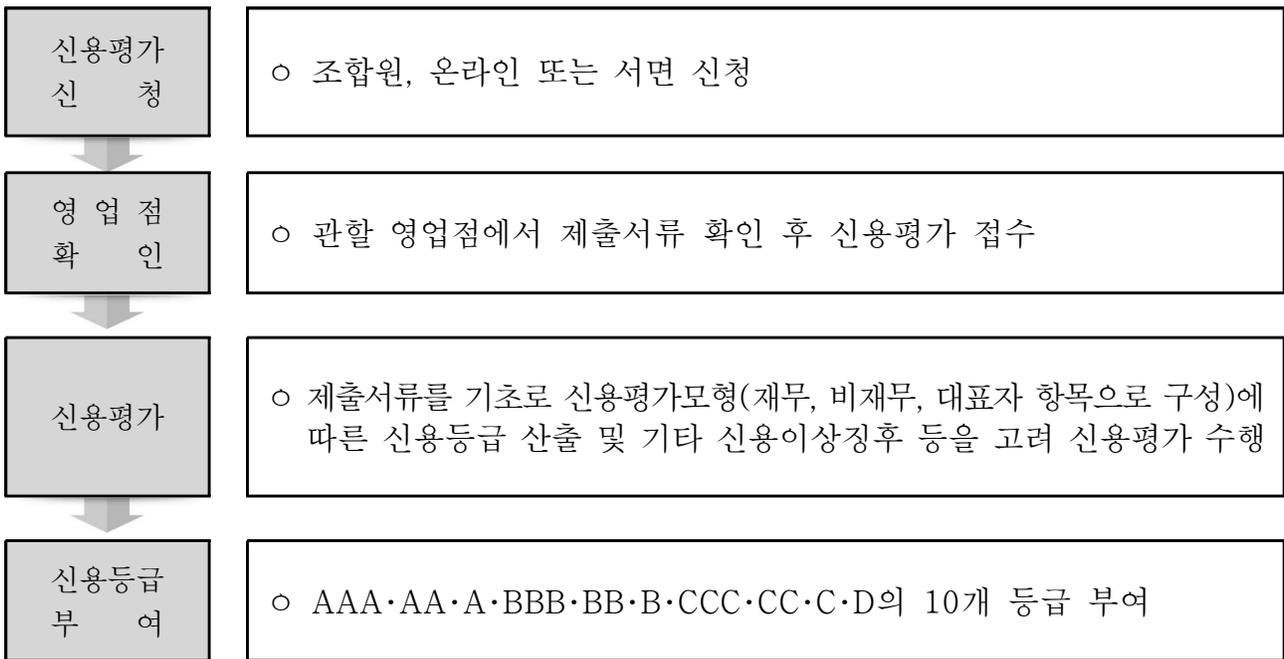
■ 신용등급의 용도

- 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좌수 기준
- 보증한도 및 보증수수료 할인·할증률 적용 기준
- 용자금 이자율 적용기준
- 기타 보증심사 등에 활용

제2절

신용평가 절차

■ 신청절차 요약



■ 신용평가 대상

□ ‘평가 제외대상’ 외 조합과 보증 또는 용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평가 제외대상

-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 기준 2개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 외부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
- 채무불이행 상태(신용불량정보 발생, 당좌거래정지, 회생신청 등)인 경우
- 워크아웃 신청(공동관리절차 개시 또는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시 제외)상태인 경우

■ 신용평가 신청기간 및 신용등급 유효기간

□ (신청기간) 신용평가 신청기간(12월 결산법인 기준)은 2023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이며, 그 외 결산일의 조합원은 각 기간에 맞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은 결산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입니다.

※ 결산일자별 신청기간 및 유효기간

결 산 일	'22.12.31.	'23.3.31.	'23.6.30.	'23.9.30.
신용평가 신청기간	<u>'23.4.1. ~ '23.5.31.</u>	'23.7.1. ~ '23.8.31.	'23.10.1. ~ '23.11.30.	'24.1.1. ~ '24.2.28.
신용등급 유효기간	<u>~ '24.6.30</u>	~ '24.9.30	~ '24.12.31	~ '25.3.31

※ 신용등급 유효기간 이내에도 신용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고, 재평가 후 새로운 신용등급이 부여되는 경우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은 즉시 상실됩니다.

■ 신청방법

□ 우리 조합의 인터넷창구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용평가신청 서식을 활용한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 분	신 청 방 법
온라인 신 청	<p>① 인터넷창구(cyberbiz.cgbest.co.kr) 접속</p> <p>② 화면 상단 ‘신청’ 메뉴 ⇒ ‘신용평가신청’ 선택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 재무제표 전송 관련 안내(p.5 ‘6.재무제표 전송방법’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재무자료 제출’ 단계에서 조합원이 재무제표 온라인 전송 가능 • 조합원 신용평가 신청 전에도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재무제표 전송 가능 </div> <p>③ 온라인 ‘신청완료’ 후, 제출대상 서류(p4 ‘5.필요서류’ 참고)를 관할 영업점에 제출</p>
서 면 신 청	<p>① 서면 신청서(양식) 다운받은 후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위치 : 조합 홈페이지(cgbest.co.kr)→고객센터→서식→신용평가 → ‘2023년도 신용평가신청서’ 선택 <p>② 작성 후, 제출 대상 서류(p4 ‘5.필요서류’ 참고)와 함께 관할 영업점에 제출</p>

▣ 필요서류

제 출 서 류	대상 조합원		비 고
	외감	비외감	
① 신용평가신청서	○	○	• 온라인 신청시 <u>서면 제출 생략</u>
② 조합원실태현황	○	○	
③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보고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 무 제 표 : 온라인 전송시 <u>서면 제출 생략</u> 감사보고서 : 원가명세서와 함께 관할 영업점에 <u>서면 제출</u> <p>※ <u>최초 평가시 2개년도 이상 재무제표 제출</u></p>
④ (임의)감사보고서	-	○	• <u>서면 제출</u> (임의 감사를 받은 비외감 조합원 중 자본 총계 25억원 이상)
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신청(파일첨부)시 <u>서면 제출 생략</u>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대체 가능
⑥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조회)동의서	-	○	• 온라인 동의서 제출 또는 직전연도에 기재출시 <u>서면 제출 생략</u>
⑦ 신기술, 특허, 실용실안권 (전용실시권)	○	-	• <u>서면 제출</u> (신용평가 시점 유효한 것만 가능)

■ 재무제표 전송방법

□ 원클릭시스템 등을 통해 재무제표를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제표 전송과 관련하여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회계 프로그램 재무제표 전송과정에서 수수료 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으면, 임의로 기재하시고, 문자가 추후 수신되어도 결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전송자	안 내 사 항	전 송 방 법
원클릭시스템	세 무 대리인	<p>○ 경 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① 조합 홈페이지(cgbest.co.kr) 접속 ② 상단 '가입/신용평가' 아래 '신용평가신청' 선택 ③ '재무제표 전송방법안내문 보기' 선택 ④ '재무제표 직접제출서비스(원클릭시스템) 바로가기' 클릭</p> </div>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대리인은 원클릭시스템 또는 자체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4월 1일부터 전송 가능 • 조합원 신용평가 신청 전 재무제표 전송 가능 	<p>① [원클릭시스템(세무증명서 및 재무자료 제출하기)] 실행 후 로그인</p> <p style="text-align: center;">↓</p> <p>② 원클릭시스템내 '3.자료등록'에서 자동조회(별도처리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p> <p>③ 원클릭시스템내 '4.업체정보 입력 및 정보활용동의'에서 동의진행</p> <p style="text-align: center;">↓</p> <p>④ '제출' 버튼 클릭</p>
	조합원	<p>○ 경 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① 조합 인터넷창구(cyberbiz.co.kr) 접속 및 로그인 ② 상단 '신청' 아래 '신용평가신청' 클릭 후 신용평가 신청 진행 ③ '신용평가신청' 및 '조합원실태현황' 입력 ④ '재무자료 제출' 화면 내 '제출방법'에서 '온라인' 클릭 후 '조합원 온라인 직접제출' 선택 ⑤ '원클릭시스템 바로가기' 클릭</p> </div>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원에 한해 원클릭시스템을 이용하여 4월 8일 이후부터 직접전송 가능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는 법인세 신고 마감일 기준 익월 8일 이후부터 제공 	
더존 Smart A	세 무 대리인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송기관 건설공제조합(기관코드 : 403)으로 입력 후, 전송업체 담당자 정보는 임의 입력 	<p>① [자동전표]</p> <p style="text-align: center;">↓</p> <p>② [금융자료전송/일일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p> <p>③ [재무제표부가세전송]</p>

제3절

신용평가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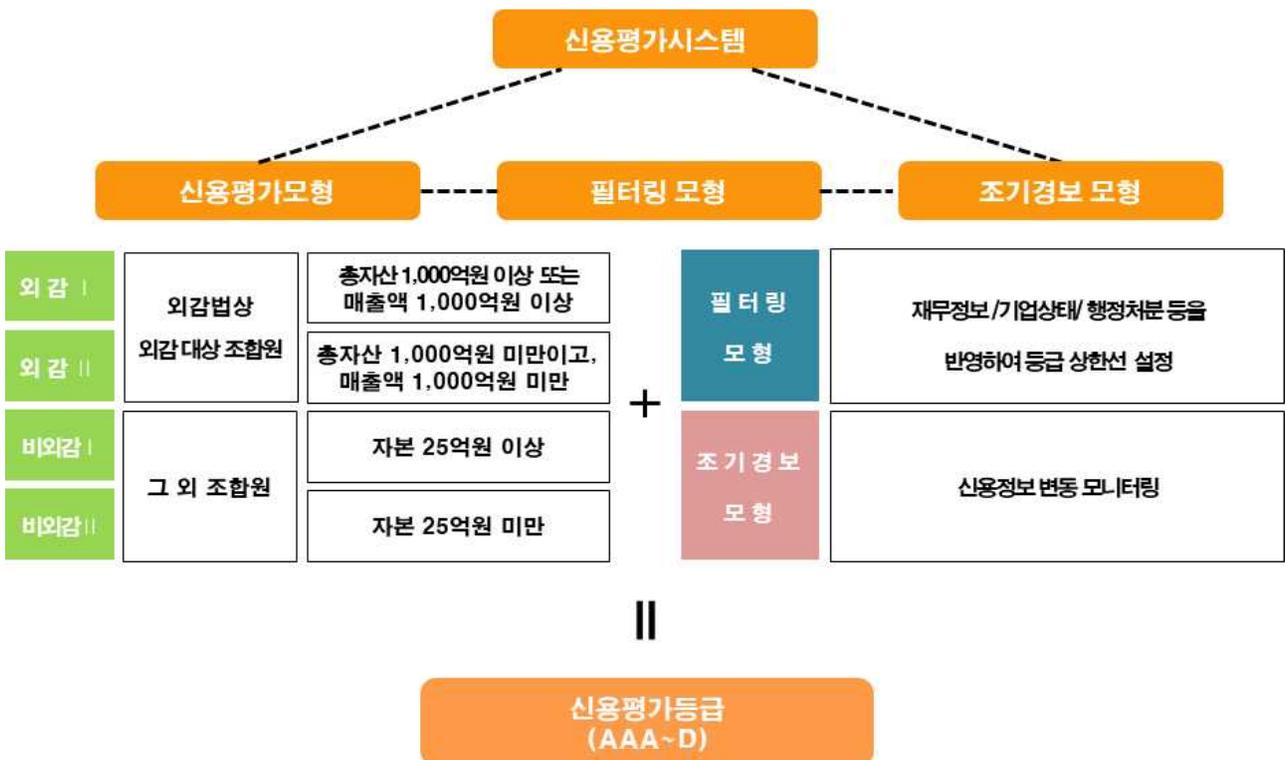
신용평가 시스템

□ 조합의 신용평가시스템은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구축·활용하여 신뢰성이 검증된 통계모델링기법을 기반으로, 신용평가 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구축되었습니다.

□ 신용등급은 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재무정보와 사전에 수집된 비재무정보*를 시스템에 적용하여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비재무정보 : 신용불량정보, 대표자신용도, 금융기관여신정보, 행정처분, 수주실적 등

□ 신용평가시스템은 신용평가모형 및 신용조기경보모형 등으로 구성되며, 신용평가시점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 이후에도 조합원의 신용도를 수시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 주요항목

□ 신용평가시 재무 및 비재무 항목별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무항목) 외부 신용평가기관과 우리 조합이 신용평가시 중요하게 체크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분 류	평가 내용	주요 지표(예시)
금융부채상환능력	• 재무수익 구조 분석을 토대로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가	• EBITDA/차입금, 영업이익/부채, 이자보상배수 등
현금흐름적정성	•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부채상환 가능 여부	• OCF/유동부채, EBIT/유동부채 등
재무구조안정성	• 타인자본의존도 및 보유자산 구성현황 분석을 토대로 재무안정성 평가	• 자본규모, 차입의존도, 부채비율, 금융자산/총자산 등
유동성	• 유동 자산 및 부채 분석을 토대로 단기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유동비율, 당좌비율, 운전자본비율 등
활동성	• 운영 효율성 등의 경영성과 분석을 토대로 향후 수익 창출 지속가능 여부	• 매출채권회전기간, 운전자산/매출, EBITDA/자산 등

- (비재무항목) 우리 조합은 크게 4가지 비재무항목을 평가하고 있으며, 비외감 업체는 대표자신용도가 추가로 반영됩니다.

	평가 요소	평가 내용
사경쟁력	시장지배력 및 사업구조	• 시공능력 및 보유업종
	영업안정성	• 매출변동성 및 수주실적 등
	기술경쟁력	• 특허 등의 신기술 보유현황
경영관리능력	재무건전성 유지	• 금융비용 상환 및 대여금의 변동성 등
	노사관리 등의 경영상황	• 퇴직률 및 대외신인도 등의 경영 현황
재무관리능력	우발채무 및 여신의존도	• 채무보증 및 지급보증 변동성 • 여신규모 및 외부조달능력
신인도	조합거래 성실도	• 조합거래 관련 채무이행도 등
	재무신뢰도 및 감사의견 등	• 행정처분 이력 등 • 차입금 누락 및 비용 과소계상 여부 등

제4절

신용평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우리 조합은 신용조기정보를 통해 신용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도에 따라 정상, 관찰, 경보(Ⅰ,Ⅱ)의 4가지 경보단계로 구분하여 경보단계에 따라 신용등급 재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부실징후 발생시 “정상 또는 관찰에서 경보단계로 변동” 또는 “경보단계 내에서 하향변동”시 기존 신용등급 효력이 상실될 수 있고, 재평가시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신용조기정보 항목

구 분	신 용 이 상 징 후
금융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신금액(대출건수) 증가• 채무보증(인수) 증가• 어음할인금액(금액) 증가• 지급보증 증가
연체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불이행 또는 연체이력(금융권·공공기관·조합)
조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사고 발생(보증금 청구)• 업무거래정지• 출자증권 (가)압류• 하자발생 접수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처분(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과도한 회수불능 채권 발생

※ 신용등급 효력상실 신용이상징후 (예시)

금융정보, 조합정보의 경우 아래 예시 비율(일수) 미만일지라도 중첩적으로 발생시 등급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신 용 이 상 징 후
금융정보	• 타법인 채무보증금액이 자본총계 대비 300% 이상인 경우
	• 최근 어음할인금액이 매출액의 3% 이상인 경우
연체정보	• 융자금 및 보증대급금 등의 채무 누적 연체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
	• 조합융자금 이자 연체가 2~3회 연속 발생된 경우
	• 상거래 연체가 1회 이상 발생
조합정보	• 조세채권 또는 조세외채권에 의한 (가)압류 발생한 경우
	• 조합 업무거래 정지기간이 20일 이상 발생
	• 보증금 청구로 20일 이상 업무거래 정지를 받은 경우
기 타	•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대형사고 발생 등으로 경영위험이 발생
	• 분식회계 발생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 신뢰성이 손상된 경우
	• 분·반기 재무제표 공시 결과 재무안정성이 급격히 저하

주) 자산, 자본,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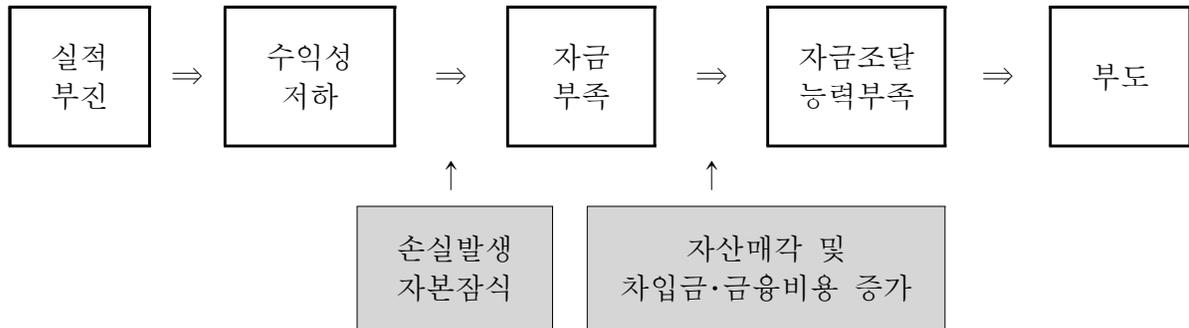
▣ 사후관리 유의사항

□ 조합원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금 융 거 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및 영업이익(현금흐름)수준을 고려한 적정한 차입금 규모 유지 • 일시적인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는 신용이상 징후로서 작용 • 자본안정성을 위협하는 채무보증(지급보증)은 신중히 고려 • 금융비용 부담 수준 고려 • 금융권 미사용여신 한도 관리
경 영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비용(수수료 등)에 대한 철저한 기일관리로 연체 등 사전 방지 • 행정처분(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하도급대금체불관련 처분)에 대한 주의
조 합 거 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와 관련한 분쟁·이견 등을 사전에 방지 • 공사 완공 후 하자보수의 적극적인 이행(하자발생 분쟁 등 대비) • 조합 업무와 관련한 협조 사항 이행 (서류 미제출, 변경처리 지연)
영 업 활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주실적(매출) 및 수익성의 안정적인 유지가 필요 • 분양사업, 해외사업, 민간개발 사업 등 진행시 사업(재무)위험 고려 • 경쟁력 확보 (영업경쟁력, 기술경쟁력 등) • 미회수채권,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관리

▣ 주요 부실화 사례

□ 기업의 부실화 과정



□ 부실화 사례 (예시)

구 분	주 요 사 례
실적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수주물량이 확보되고 있지 않거나, 대부분 장기계속공사로서 단기간 내 수익으로 인식할 공사물량이 부족한 경우
수익성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수익으로 차입금(부채)상환을 계획하나, 예상과 달리 원가상승 등 채산성 악화로 자금부담 가중
자금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자산 중 장기간 회수 지연된 공사미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운전자금 부족 등 자금회전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관계사 등에 채무보증 및 자금대여로 실질적인 자금유출 위험 증가 • PF사업 또는 분양(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사업성과의 부진으로 인하여 미착공(미분양) 재고자산, 시행사 자금대여 등으로 자금유출(채무부담) 증가
자금조달 능력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등의 여신한도가 소진되거나, 신인도가 미흡하여 추가적인 여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외부 자금조달능력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및 매출규모 대비 차입금(부채)규모가 과도한 수준인 상태에서 대내외 환경악화로 인한 자금유입 제한으로 인해 채무상환부담 가중

1. 신용평가 일반

1 조합 신용등급이 타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 신용등급은 평가목적 및 평가기관에 따라 신용등급 체계와 평가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조합 신용등급과 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 우리 조합은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등을 차등 부여하므로 국토교통부의 공제조합 감독기준 조합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운영(장·단기 부도예측 중시)하고 있으며, 평가시 회사의 차입금 등 부채규모, 현금 유동성 등 채무상환능력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반면,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등은 상대적으로 매출액 증가율을 포함한 성장성 및 수익성 등 상거래 이행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조합보다 관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통상 공공입찰용 신용등급은 조합 신용등급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회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공공입찰용 및 조합 신용등급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2 신용평가모형 변경에 따라 조합원의 재무상태 변경없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나요?

- 신용평가는 차주(조합원)의 부도가능성(부도확률)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각종 업무거래(보증한도 및 수수료율 결정 등)에 활용함으로써 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조합원의 부도확률에 따른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매년 신용평가모형의 부도변별력 및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기업 및 경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기존 모형의 변별력이 떨어지게 될 경우 모형의 변경(약 4 ~ 5년 주기)도 필요합니다.
- 모형 변경 과정에서 대내외 경기변화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 기준값 변경에 따라 일부 조합원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모형 개선 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등급변동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전년도 대비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등급이 동일한 이유는?

- 조합 신용평가방법은 해외 및 국내 선진금융기관에서 이미 구축하여 그 통계적 유의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선진평가기법이 적용된 방법입니다.
- 평가기준은 유동성, 재무안정성, 수익성 등의 재무항목과 시공능력, 여신금액 등 기업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항목 및 대표자신용도가 결합되어 있는 바, 단순히 매출증가만을 이유로 등급이 상향되지 않으며,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 여부, 재산성 및 수익성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인 채무상환능력의 변동이 있는지를 최종 평가합니다.

4 정기평가 등급이 만족스럽지 않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 신용등급의 안정성을 위해 재평가는 우리조합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되므로 임의적으로 재평가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현재 외감법인 중 결산일 이후 외부 감사인에 의해 분·반기 검토를 받고 전자공시된 조합원에 한하여 유의적인 변동(재무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재평가 대상이 됩니다.
- 이는 분·반기 공시 의무대상인 일부 상장사를 제외하고는 결산일 이후 시점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고, 비외감 조합원의 경우 국세청 신고 자료가 아닌 재무제표를 평가에 반영할 경우 평가자료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5 조합 신용등급을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 우리조합 신용평가는 조합과의 업무거래(보증한도 및 수수료 결정 등)를 위하여 조합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는 것일 뿐, 조달청 등 공공입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민간공사 입찰참가시 발주자가 조합 신용등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신용등급확인원’을 조합 인터넷창구[제증명발급-신용등급확인원] 또는 영업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주자가 조합에 직접 요청시에는 조합 내부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신용등급 제공 불가)
- 아울러, 우리조합 신용평가에 사용하는 평가모형은 신용평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마련된 건설업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으로써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고 기업신용도(신용위험)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신용평가 결과통지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 카카오톡(또는 문자)통지 방법
인터넷 창구를 통해 신용평가 신청시 [신용평가신청-결과통지-통지방법]에서 카카오톡 또는 문자통지 선택 및 수신자를 선택 완료할 경우 신용평가 결과가 카카오톡(또는 문자)으로 통지됩니다. 카카오톡(또는 문자) 통지는 서면통지에 비해 평균 3영업일 이상 빠르게 평가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평가 신청 후 담당직원 변경 등 수신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영업점에 즉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통지 방법
인터넷 창구를 통해 신용평가 신청시 [신용평가신청-결과통지-통지방법]에서 서면통지를 선택하시거나, 신용평가 신청서를 서면으로 영업점에 제출한 경우 신용평가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2. 신용평가 신청 개요

1 신용평가의 대상과 신청시기,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우리조합 신용평가의 대상은 조합과 업무거래를 하고자 하는 조합원으로 신용평가 신청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신용평가 신청은 가능합니다.
- 다만, 신용평가가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평가에 일정기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하여야 기존 등급의 유효기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3. 6. 30.) 경과 전에 평가가 이루어져 조합과의 업무거래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으니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일이 12월 31일이 아닌 조합원의 신청시기는 p.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p4 참조)는 신용평가신청서, 조합원실태현황,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기타 평가서류가 있습니다.

2 신용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신용평가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평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등급(D등급)으로 조합과 업무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조합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위한 출자좌수 및 보증·용자의 이용한도(수수료)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3 작년에 회사를 설립했는데 신용평가가 가능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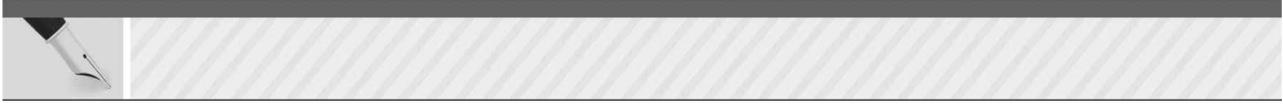
- 조합의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최소 2개연도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설립하여 1개연도 재무제표만 있는 경우 금년도 신용평가는 불가능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용평가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4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되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보증수수료 및 보증한도
- 융자금이자율 및 1좌당 융자한도
- 보증서 발급시 제출서류
- 업무거래정지 범위 등

5 신용평가 신청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 신용평가지 수수료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세무대리인이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무제표 전송시에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재무제표 전송 과정에서 휴대폰번호 및 수수료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으나 임의로 기재하시고, 문자가 수신되어도 결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신용평가신청서 등 작성방법

1 신용평가 신청서의 경리회계담당자 및 결산(세무)대리인은 누구를 기재하나요?

- 경리회계담당자는 회사(조합원) 담당 직원을, 결산(세무)대리인은 세무사 사무실 등의 담당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2 건설업종 보유현황은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합공사업(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과 전문공사업(철근·콘크리트, 실내건축공사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규 등록된 건설업종은 관련 등록증(신고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기존의 관계회사를 삭제하려는데 계속 오류가 나는 이유는요?

- 기존의 관계회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영업점에 연락하시고 관계회사가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다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이 참고가 되나요?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발행을 위해 받은 신용평가는 참고 사항이 되나, 기타 조달청 등 공공입찰용 등의 목적으로 받은 신용평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5

매출처별 매출액 명세에 발주처별 내용을 전부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 발주처별로 간략한 공사명과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사내역이 많을 경우 별도로 작성하신 내역(ex. 매출액 명세서를 대신할 수 있는 계정별 원장 등)이나 거래처별 공사건별 매출액이 확인 가능한 자료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4. 신용평가 신청 및 재무자료 제출관련

1 신용평가 신청시 인터넷으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 우리조합 홈페이지(인터넷창구)를 이용한 신청과 영업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제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신용평가 신청 완료 후 수정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터넷을 통해 신용평가를 신청하고 신청완료를 누른 후, 수정을 하고자할 때에는 먼저 신청완료화면 하단의 신청취소를 누르신 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영업점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관할 영업점에 연락하셔서 접수 취소를 요청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법인세신고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법인세신고자료는 신용평가 필요 서류가 아니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4 비외감법인의 경우 재무제표만 전송하면 조합에 추가적인 제출서류는 없는 건가요?

- 온라인으로 재무제표를 전송하셨더라도 부속명세서 등은 우리조합 홈페이지 인터넷창구를 통해 제출(첨부파일 업로드)하거나, 서면으로 신청시 관할 영업점에 신용평가신청서와 부속명세서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셔야 합니다.

5 재무제표 온라인 전송 후, 조합 수신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조합 원클릭시스템으로 재무제표 전송시에는 원클릭시스템 로그인후 우측 상단 <재출이력조회>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더존스마트A)로 전송시 www.datafine.co.kr 회원가입 후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재무제표를 전송한 후 재무제표전송 여부 확인까지 약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간혹 제출기관을 잘못 선택하셔서 전송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오니 제출기관을 반드시 '건설공제조합'으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6 재무제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온라인 전송 방법

원클릭시스템을 통해 조합원사와 세무대리인 모두 재무제표 온라인 전송이 가능하며, 회계프로그램(더존 스마트A)을 이용하여 전송하고자 할 경우 세무대리인만 전송 가능합니다.

[재무제표 전송방법 안내문 및 재무제표 전송방법(p.5) 참고]

□ 직접제출(서면) 방법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원본을 관할 영업점으로 직접 제출(우편 또는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무조정 및 기장을 직접하시는 조합원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 책자를 관할 영업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7 더존 스마트A로 전송하려는데 건설공제조합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기관코드 '403'으로 조회하시면 '건설공제조합'이 조회됩니다. (NICE평가정보가 아님에 주의)

8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신용평가는 결산재무제표의 전산입력 과정이 필수적이고 평가지표의 정확한 산출을 위하여 계정별 명세에 따라 세부적인 분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본 25억 미만 비외감법인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필수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평가단계에서 필요할 경우 별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서식 작성이 곤란할 경우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책자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9

작년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 작년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신용평가용)[이하 '신용평가용 동의서'] 제출 후, 대표이사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신용평가용 동의서는 비외감법인에 한하여 제출하며, 온라인 제출과 서면 제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은 우리조합 홈페이지 [인터넷창구-마이페이지-개인(신용)정보동의서 제출(신용평가용)] 메뉴에서 대표자명의 휴대폰 또는 범용인증서 인증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서면 제출은 우리조합 홈페이지 [고객센터-서식/약관-서식-개인정보동의서]에서 신용평가용 동의서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전국 영업점 연락처

영 업 점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서울금융센터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16층	02-3449-8830	02-6006-4218
경기금융센터	1627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05, 1층 2층	031-253-1501	02-6006-4220
강원금융센터	24217	강원도 춘천시 동면 후만로166, 건설회관 1층	033-253-5061	02-6006-4221
대전충남 금융센터	35261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6 (국민연금 대전사옥 1층)	042-489-7611	02-6006-4223
충북금융센터	28760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82, 2층(건설회관)	043-256-5156	02-6006-4222
전북금융센터	5498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280 건설회관 3층	063-276-2031	02-6006-4224
광주전남 금융센터	61932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2층	062-363-0018	02-6006-4225
대구경북 금융센터	41936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6층	053-255-0867 053-255-0868	02-6006-4226
부산금융센터	444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709, 서면금융프라자 6층	051-463-8147	02-6006-4227
경남금융센터	5131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50 4층	055-294-3261	02-6006-4229
인천지점	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7 현대해상빌딩 3층	032-439-7197	02-6006-4219
울산지점	44417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179, 건설회관 2층	052-245-15040	02-6006-4228
제주지점	63125	제주 제주시 신대로64, 9층(연동,건설회관)	064-744-1961	02-6006-4230

